## 메爬<sup>⋒</sup>┕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

1회 (1/08)

- 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  - ㄱ.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
  - ㄴ.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
  - ㄷ.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
  - ㄹ.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
  - ㅁ.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
  - $\bigcirc$

② 7, ∟

③ 7, 6, 6

- ④ 7. L. ㄷ. ㄹ
- ⑤ ㄴ. ㄷ. ㄹ. ㅁ
- 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(29회기출문제)
-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,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"산"자를 붙인다.
-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.
-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, 본번과 부번 사이에 "-" 표시로 연결한다.
-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군·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.
-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, 나머지 필지 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.
- 3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? (단,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) (31회기출)
- ① 변전소, 송신소,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(湧出口)와 그 유지(維持) 에 사용되는 부지
- ② 여객자동차터미널,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
- ③ 갈대밭,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, 산림 및 원야(原野)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·자갈땅·모래 땅·황무지 등의 토지
- ④ 공항·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물의 부지
- ⑤ 도축장, 쓰레기처리장,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·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 로 갖춘 야영장·식물원 등의 토지

## 께た**께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**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

1회 (1/08)

- 4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? (단. 아파트·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)
- ① 일반 공중(公衆)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 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- ② 「도로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
-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
-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
-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- 5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·호수 등의 토지와 연·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의 지목 구분은?(30회기출)
- ① 유지(溜池) ② 양어장 ③ 구거 ④ 답 ⑤ 유원지

## 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1. ③

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시행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 할 것

- 가,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
- 나.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
- 다.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
- 2. ④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(법정 동 리) 차례대로 부여한다.
- 3 (2)
- ① 변전소, 송신소, 수신소는 잡종지이며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(湧出口)와 그 유지 (維持)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이다.
- ③ 갈대밭,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이며 산림 및 원야(原野)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·자갈 땅·모래땅·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이다.
- ④ 공항·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이며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읻다.
- ⑤ 도축장, 쓰레기처리장, 오물처리장은 잡종지이며 일반 공중의 위락·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·식물원 등의 토지는 유원지이다.
- 4.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용지이다.
- **5**. (1)